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38호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창의·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창의·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군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창의·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군민으로 육성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교육”이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창의·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창의·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창의·인성교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사업) 군수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공연,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충(忠), 정직(正直), 책임, 존중, 배려, 소통(疏通),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등 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

□ 『인성교육진흥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